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11 월 6 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손성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그 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면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그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사업 중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함 (안 제17조제4호 및 제5호)
- 나.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에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함 (안 제17조제6호)
- 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시설관리 공단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함 (안 제21조제5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0년 1월 1일 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위탁한 충무체육관, 월평 싸이클 경기장 등 9개 시설의 위탁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 2000년 12월 1일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안으로 가결된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의 관리·운영사업을 조례 안에 명시하면서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 공단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위탁한 체육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경우 연간 280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위탁 체육시설물중 시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설을 제외하고, 시의 지원이 있어야만 운영가능한 체육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